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나경원  
윤상현 · 김예지 · 한지아  
강선영 · 김용태 · 임이자  
조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, 창업 활성화 및 교육·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, 창업비 지원,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

##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3(청년 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만의 청년(이하 “청년 귀산촌인”이라 한다)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제공, 창업비 지원,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·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17조의3(청년 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만의 청년(이하 “청년 귀산촌인”이라 한다)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제공, 창업비 지원,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·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